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
번호

3456

2026년 3월 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2월 9일, 김기덕 의원(찬성자:13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6년 3월 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기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에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,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,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, 최근 기후변화를 비롯해 각종 산업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복잡화 등을 토대로, 인공지능에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- 이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하고,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인공지능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8조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(AI) 기술을 재난관리 체계에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시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현행	개정안
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생략)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<u>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</u>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	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관련한 사항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</u> -----.

- 최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¹⁾이 시행(‘26.1.22.)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라 할 수 있음.
-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4²⁾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

1) [법률 제20676호, 2025. 1. 21., 제정]

2) 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(이하 “수집등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석·활용·공유·공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서울시 ‘도시안전 기본계획’에 본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 활용을 추가하는 것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향후 실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, 개인정보 보호 문제, 그리고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, 데이터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5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원중,
김원태, 김인제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송도호,
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희,
이종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에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,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,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, 최근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복잡화 등을 토대로, 인공지능에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
- 이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하고,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인공지능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” 을 “관련한 사항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<u>관련한 사항</u>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관련한 사항</u> <u>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</u> 에 대해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